

수술실 CCTV 설치 · 운영 관련 추가 Q&A

※ 기존 안내한 가이드라인('23.9) 및 Q&A('23.9)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임

1. 설치 대상 관련

	질의	답변
1	전신마취 수술을 하지 않고 수면마취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이 경우에도 CCTV 설치 대상인지?	수술실 설치 “의무”가 없더라도 수술실을 갖추어 신고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수술실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고, 여기에서 수면마취 수술을 시행 한다면 CCTV 설치 대상임

2. 촬영 대상 및 촬영 요청 관련

	질의	답변
1	부분마취로 수술 후 마지막 봉합 시에만 전신마취로 재울 경우도 촬영 대상인지? 촬영은 마취 시작 시점부터 하면 되는지?	미리 정해진 수술 계획상 부분마취 이후 전신마취로 이어진다면, 전신마취를 하는 단계부터는 촬영 대상이 됨 촬영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마취를 하는 시점부터 하면 됨 (기술적·행정적 여건상 필요하면 전신마취 시작 전의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)
2	의식이 없는 상태(부분마취) 수술을 계획했으나, 수술 중간에 긴급하게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도 촬영 대상인지?	촬영 결정은 수술 전에 계획된 마취방법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수술 중간의 환자 상태 변경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마취 방법 변경이 있어도 수술 중에 촬영 여부를 재결정 해야 하는 것은 아님
3	환자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할 경우 제시해야 하는 환자의 동의서 양식은 없는지?	환자 본인 동의서는 정해진 서식은 없음 환자 본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

	질의	답변
4	미성년자가 촬영 요청을 할 수 있는지?	환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음
5	촬영 안내 시 구두 안내만 해도 되는지? 또는 안내문 게시만 해도 되는지?	안내의 방법을 제한하지는 않음, 다만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
6	촬영 요청 안내 시 녹음 관련 사항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지?	녹음 가능 여부를 안내해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,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함께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

3. 의료진 등의 동의 관련

	질의	답변
1	열람 관련 의료진의 미동의 사유가 있는지? 미동의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?	열람 관련 동의 여부는 의료진의 자유로, 미동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
2	의료진이 열람에 비동의할 경우에도 양식의 개인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? 주소에 병원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?	동의서 등 서식은 가급적 충실히 기재해야 하며, 각 서식란에 어떠한 내용을 적을지는 작성자가 결정 (반드시 집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)

4. 열람·제공 절차 관련

	질의	답변
1	개인 열람 요청 시 요청서만 제출하고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열람 거부 사유로 분류하여 영상을 삭제해도 되는지?	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4항에 따라, 열람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열람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
2	수사기관 요청 시 의료법 제21조(기록의 열람) 범위를 준용하면 되는지?	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은 21조와는 관계 없이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만 따르면 됨
3	열람 요청 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불필요한지?	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제5항에 따라 열람·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확인해야 함
4	정보주체 동의만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열람 가능한지?	열람 또는 제공이 이루어질 때는 마스크(모자이크) 처리 없이 촬영된 영상 정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함 다만, 개인 열람 요청 시 신청자의 청구 내용에 따라 마스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함 (가이드라인 기 안내)

5. 촬영/열람 비용 청구 관련

	질의	답변
1	열람 요청 비용 외에 촬영 요청 비용도 요청자(환자 또는 보호자)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?	촬영 요청자에게 촬영 요청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음 (열람 요청자에 대한 비용 청구와 달리 촬영 요청에 대한 비용 청구 규정은 없음)
2	열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하면 되는지?	열람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설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. 다만, 의료기관은 설정한 비용의 실비 범위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

젠더 이슈등

6. 기타

	질의	답변
1	촬영 시 담당자 부재 또는 기술적 문제 발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대처 방안은?	의료기관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, 이러한 상황이 없도록 촬영 관련 인력 및 기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
2	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음에도 촬영 영상을 분실, 도난, 유출, 훼손당한 경우는 처벌이 없는지?	의료법 제88조의2 처벌 규정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